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11. 2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11. 21.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2007.12.3)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박유미 의약과장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3조)

- 가)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 도모
- 나)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
- 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2)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가)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책자 등의 구입·보급과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

- 나)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다)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가)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 다)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 라)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 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4)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25인으로 구성
 -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기관, 단체의 장(서부교육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나)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 라)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지원

5)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나)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3. 검토보고 _____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 안전도시 구현

분위기 확산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보급 등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손상발생 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두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음.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각종 사고에 의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저한 예방과 사후조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 사고에 대한 경각심 유도 등 개인의 변화와 환경적 변화,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안전한마포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자치구 건강·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 평가결과, 안전도시 시범 사업구(마포구, 송파구)로 선정되었고, 마포구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의 손상발생 규모와 손상유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마포구 아동 및 청소년 손상현황 조사'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마포구 손상현황 분석 및 우선순위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손상감시 시스템 운영, 어린이 안전이론 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담부서와 인력 체계 미흡,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및 행정 내부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외부의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